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38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윤영석·김태호·조경태

곽규택 • 박대출 • 이인선

최형두 • 구자근 • 서범수

김상욱 · 최보유 의원

(119]

제안이유

건축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전문 분야의 분리가 확대 되고 있음.

건축 관계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관계 전문분야가 분리발주 될수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별 종합조정의역할 부재로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증가되고, 재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분리발주에 따른 각 분야별 업무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관계자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위해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 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 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물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발주자가 전기, 소방 등 분리수행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등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조 정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전기·소방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업무의 권한 및 업무범위 등 마련(안 제67조의2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종합조정자"란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로서 발주자가 전기, 소방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등을 종합조정하는 업무(이하 "종합조정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7조의2(종합조정자) ① 건축주는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전기, 소방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자(「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종합조정자로 지정하여 종합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와 관계전문기술 자는 종합조정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종합조정자는 건축공사의 품 질·안전 관리와 분야 간 조정을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조정업무의 권한 및 업무범위, 대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조정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①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_<신 설>	17의2. "종합조정자"란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로서 발주자가 전기,
	소방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
	탁한 분야의 업무와 관계전문기
	술자의 업무 등을 종합조정하는
	업무(이하 "종합조정업무"라 한
	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 21. (생 략)	18.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7조의2(종합조정자) ① 건축주는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설계자
	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전기, 소방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
	록한 자를 말한다)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
	자를 종합조정자로 지정하여 종합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

<u>다.</u>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 문자격을 가진 자와 관계전문기술 자는 종합조정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종합조정자는 건축공사의 품질·안전 관리와 분야 간 조정 을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조정업무의 권한 및 업무범위, 대가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